

대 법 원

2016. 1. 28.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두55424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대표이사 황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박해성, 조규석, 최진수, 송대준
 피고, 피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수행자 한희선, 권오성, 변규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해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4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u>이기택</u>	
	대법관	이인복	<u>이인복</u>	
주심	대법관	고영한	<u>고영한</u>	
	대법관	김소영	<u>김소영</u>	